

#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95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1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의원  
(15명)

## 1. 제안이유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747,85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47,855천원으로 연평균 349,571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지원사업(제4조)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제4조 제1호)은 추모 조형물 설치로 전제하여 추계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747,855천원
  - 총비용 = 추모사업비 + 관련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비 + 추모공간 조성사업비
  - = 149,500천원 + 390,000천원 + 1,208,35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추모사업비 (제4조 제1호)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149,500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비 (제4조 제2호)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390,000
	추모공간의 조성사업비 (제4조 제3호)	241,671	241,671	241,671	241,671	241,671	1,208,355
	소계(b)	349,571	349,571	349,571	349,571	349,571	1,747,855
	총비용(b-a)	349,571	349,571	349,571	349,571	349,571	1,747,855

$$1) \text{추모사업비용} = \sum_{i=1}^5 (\text{연간추모사업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추모사업비용 ≍ 29,900천원

·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은 추모 조형물 설치로 전제하여 추계

· 조형물 설치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역사관 어린이체험단 조형물 설치공사’ 사업비 준용(2018)

$$2) \text{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비} = \sum_{i=1}^5 (\text{연간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비용

≍ 78,000천원

≍ 문화·학술비(60,000천원) + 조사·연구비(18,000천원)

·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사업비 준용(2019)

$$3) \text{추모공간의 조성사업비용} = \sum_{i=1}^5 (\text{연간추모공간조성사업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추모공간 조성사업비용 ≍ 241,671천원

·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비 준용(2018)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